

대법원 2017도16443 직무유기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이기택)은 2018. 11. 9. 서대문구 A 고등학교의 교장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직무유기 사건에서 **피고인의 상고를 기각**하여, 피고인이 학교 소속 평교사인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해자를 잡아끌어 함께 블루스를 추도록 한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고, 피고인이 학교 소속의 A교사로부터 학교 소속의 B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진상조사 등 적절한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교장의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**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**함(대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7도16443 판결)

1. 사안의 내용 및 원심의 판단

▣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은 2013. 7. 22. 21:00경 A 고등학교의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연수장소인 수련원 근처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교사인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그의 팔을 잡고 세계 당겨 무대 쪽으로 데려가 한 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블루스를 추면서 피고인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밀착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등을 감싼 손에 힘을 주어 피고인의 몸 쪽으로 밀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함
- 피고인은 교장으로, 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' 및 그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교내 성폭력 사건을 보고 받으면 학

부모에게 알리고 교육감에게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확인 및 조사 하도록 지시·감독하여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. 그럼에도 위 학교 교감을 통하여 A교사로부터 B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해당교육청에 보고하거나 사안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함

▣ 하급심의 판단

- 1심 : 유죄(징역 6월, 집행유예 1년)
- 원심 : 피고인의 항소기각

▣ 원심의 판단근거

-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
 -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, 나이,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,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고,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 정면이 서로 맞닿지 않게 자신의 몸을 뒤로 빼려 노력하다가 다른 사람이 떼어내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행위를 멈춘 경위, 결국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함
- 직무유기
 -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학교장인 피고인에게 성추행 사건 발생시 진상조사 등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인정됨에도 진상조치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,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도 않으므로,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로 판단됨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사건의 쟁점

- ▣ 교장인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밝힌 교사인 피해자를 잡아끌어 블루스를 춘 것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
- ▣ 피고인이 교내 강제추행사건 발생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진상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인정되는지,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

나. 판결 결과

- ▣ 상고기각 (유죄 확정)

다. 판단 근거

- ▣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함

3. 판결의 의의

- ▣ 외견상 폭행,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의 행사에 의하여 성적으로 예민한 부분에 대한 밀접한 접촉을 수반하는 사교댄스를 추도록 한 경우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사례임
- ▣ 교내 성폭행 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상급 교육청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인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임